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종호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전기통신사업법」 개정 및 시행(‘24.7.31.)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고, 해당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문기관 지정을 할 수 있음에 따라 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수정 및 신설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기존 통합관리센터 업무에 '고유식별번호 공유' 뿐만 아니라 '거래사실 확인서 발급' 업무 추가(안 제51조의제1항 및 제1항제4호)
- 나. 통신사가 통신서비스 사용 차단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확인서를 발급한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도 추가(안 제51조의제2항제3호)
- 다. 안 제51조의제1항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합관리센터 구축·운영에 필요 비용 지원 가능(안 제51조의제4항)
- 라. 중고 단말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시 전문기관의 장의 확인 사항 규정(안 제51조의제5항)
- 마. 중고 단말 매수인이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용 차단 해제 요청 근거 마련(안 제51조의제6항)
- 바.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등(안 제51조의제7항 및 제8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부처 합의 전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1조의 제목 “(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등)”을 “(고유식별번호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을 위한 전문기관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60조의2제2항”을 “법 제60조의2제4항”으로, “공유를”을 “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의 효과적인 발급을”로, “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하고,”를 “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의 업무를 수행하는 통합관리센터(이하 “통합관리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을 위해 필요한 업무

제51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따른 고유식별번호”를 “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서에 기재된 매수인이 전문기관을 통해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. 다만, 법 제60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라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 전문기관에 통보한

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.

⑤ 법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중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(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포함한다)에게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매도인 및 매수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것

가.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

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 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대체수단

2. 거래된 중고 통신단말장치가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

⑥ 제5항에 따라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매수인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.

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,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.

1. 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 제15조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

2.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

여 정하는 기관

⑧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중고 통신단말장치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51조(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 관 등) ①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통신단말장치의 고유한 국 제 식별번호(이하 “고유식별번 호”라 한다)의 효율적인 공유를 위하여 지정된 전문기관은 고유 식별번호 통합관리센터를 설치 하고,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해야 한다.		제51조(고유식별번호 공유 및 거 래사실 확인서의 발급을 위한 전문기관 등) ① 법 제60조의2 제4항----- -----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의 효과적인 발 급을 --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 서의 발급의 업무를 수행하는 통합관리센터(이하 “통합관리 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 ---.		
1. ~ 3. (생 략)		1. ~ 3. (현행과 같음)		
<신 설>		4.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을 위 해 필요한 업무		
② 「전파법」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 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는 신고·통보기기에 대해서는 즉시 그 고유식별번호를 고유식 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해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등록정보를 삭제해야 한다.	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	
1. · 2. (생 략)		1. · 2. (현행과 같음)		

<신 설>

③ (생 략)

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센터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<신 설>

3.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서에 기재된 매수인이 전문기관을 통해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. 다만,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 전문기관에 통보한 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--- 따른 -----

-----.

⑤ 법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중 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 (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포함한다)에게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매도인 및 매수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것
가.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

<신 설>

<신 설>

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
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
률」 제23조의3에 따른 본
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대
체수단

2. 거래된 중고 통신단말장치가
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에
해당하지 아니할 것

⑥ 제5항에 따라 거래사실 확인
서를 발급받은 매수인은 전문기
관의 장에게 해당 통신단말장치
의 사용 차단 해제를 신청할 수
있다.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
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해당
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해제
를 요청하여야 한다.

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
법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문
기관을 지정하는 경우, 다음 각
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
한다.

1. 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 제
15조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

2.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
템 구축·운영에 전문성이 있
는 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

<신 설>

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
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
기관

⑧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
중고 통신단말장치 거래사실 확
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과학
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
고시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
보통신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
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60조
의2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지
정된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에
납부하여야 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2 - 6657